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공급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2017–건축과 – 분양신고–7(2017.06.20)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 [허가번호 : 2017–건축과–신축허가–21 (2017.06.13)]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상업시설용지 1블록
- 대지면적 : 전체 14,437.00㎡ 중 오피스텔 지분 14,031.4866㎡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91,441.6436㎡ 중 오피스텔 185,581.7454㎡
- 건축물 층별 용도 : B5~B1 주차장, 기계 · 전기실, 1F~2F 부대시설, 1F~49F 오피스텔, 1F~2F 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지하5층~지상49층, 4개동, 오피스텔(1,192실)
- 주차대수 : 총 1,309대(오피스텔 1,265대, 근린생활시설 44대)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규모 및 공급면적

(단위 : ㎡)

타입	공급실수	실별 공급면적				합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59	414	59.9773	29.3056	4.8320	36.5860	130.7009	9.3017
79	92	79.8953	39.0374	6.4368	36.5860	161.9555	12.3905
84A	640	84.9769	41.5204	6.8461	36.5860	169.9294	13.1788
84B	46	84.9769	41.5204	6.8461	36.5860	169.9294	13.1788

▣ 계약금액 및 납부일정표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공급실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0%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6회차(10%)	7회차(10%)	20%
							계약시	2017.11.15	2018.05.15	2018.11.15	2019.05.15	2019.11.15	2020.05.15	2020.10.15	입주지정일
59	414	최고가	125,340,000	211,600,000	21,160,000	358,10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71,620,000
		최저가	93,940,000	158,600,000	15,860,000	268,40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53,680,000
79	92	최고가	162,583,000	274,470,000	27,447,000	464,50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46,450,000	92,900,000
		최저가	132,100,000	223,000,000	22,300,000	377,40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75,480,000
84A	640	최고가	169,649,000	286,410,000	28,641,000	484,70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96,940,000
		최저가	125,974,000	212,660,000	21,266,000	359,90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71,980,000
84B	46	최고가	168,109,000	283,810,000	28,381,000	480,30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96,060,000
		최저가	143,197,000	241,730,000	24,173,000	409,10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81,820,000

▣ 공통사항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면적, 층, 향, 동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별 최저, 최고금액으로서 호실별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안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세대 타입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세대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벽체 공용면적은 전체 세대의 벽체 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세대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공급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택배보관실, 재활용폐기물 보관소, 부대시설, 복도, 계단, 로비, 벽체두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관리실, 기계실, 발전기실, MDF, 지하주차장 등)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해당용도별 전용(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사용하는 영역으로 면적배분되어 있으며, 용도별 배분된 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대지공급 당시의 면적에 의하여 실별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실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공급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동법상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현장 청약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타입만 청약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당첨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동/호실은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공급일정	장소
청약일시	2017년 06월 21일(수) 10:00~16: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23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시	2017년 06월 22일(목) 10:00 이후	
계약일시	2017년 06월 22일(목) 10:00~16:00	
청약금 환불기간	2017년 06월 29일(목) 10:00 이후	

※ 청약금 환불일정은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청약신청방법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내용	타입별 2,000만원	신한은행 140–011–824835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 김규철)	무통장 입금 (현장에서는 청약신청금을 수납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청약 타입 및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84A타입을 청약한 홍길동 → 84A홍길동)
- 청약신청금은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외의 납부는 청약효력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을 무통장 입금 하신 분도 필히 견본주택에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제출 및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 대리신청시 :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자 본인 명의)
법 인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내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 법인 명의)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제3자 대리 청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인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17.06.22.(목요일) 10:00 이후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2017.06.29.(목요일) 이후에 청약접수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온라인입금 됩니다.(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당첨자 포함) 및 청약미신청자 중 청약신청금 입금자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자 중 청약 미신청자 구비서류

구비사항
환불받을 통장사본(입금자와 동일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등

※ 상기에 해당하는 자는 구비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당초 환불 일정과 다를 수 있으며,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7.06.22(목요일) (1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외국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오피스텔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1–824739	한국자산신탁(주) 김규철
오피스텔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각 호실 계약서상 가상계좌	한국자산신탁(주) 김규철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계약서상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급금액 납부 지정계좌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501홍길동"이라고 기재)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사가 공급금액 납부에 대하여 입실자(계약자)에게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경우에 입실자(계약자)는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부터 오피스텔 공급공고 상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호수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중도금 1차를 본인납부 한 계약자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 가능한/할 경우 총 공급금액의 50%범위 내 이자후불제 대출을 알선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추후 안내(알선)하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사와 대출가능 금융기관간 대출업무협약이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와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조건(금융기관, 금리 등)에 이의가 있는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융기관 알선이 불가능하거나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불가)될 경우 공급금액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대하여 시행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계약서에 표시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플러스옵션)

- 추가선택품목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1) 팬코일유니트 (FCU) (단위 : ㎡,원/VAT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판매가	비고
59	1대	침실2	1,300,000	(거실,침실1) 기본제공함
79	2대	침실2+침실3	2,600,000	(거실,침실1) 기본제공함
84A	2대	침실2+침실3	2,850,000	(거실,침실1) 기본제공함
84B	2대	침실2+침실3	2,850,000	(거실,침실1) 기본제공함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VAT포함)

품목명	타입	제품명 및 모델명	판매가	비고
양문형 냉장고	전 타입	LG전자 홈바형 (R-L712JCS)	5,300,000	택1
		LG전자 디스펜서형 (R-L692JYS)	7,100,000	
		냉장고 전면판넬	100,000	택
전기오븐렌지	전 타입	LG전자 기본형 (MZ385EBT)	450,000	택1
		LG전자 고급형 (MZ940CL)	650,000	
전기쿡탑	전 타입	LG전자 하이라이트3구형 (MH632RA)	400,000	택1
		LG전자 하이라이트2구, 인덕션1구(BEH3G)	800,000	

※전기쿡탑 미선택시 일반 가스쿡탑(엘지전자/3구형)이 설치됩니다.

(3)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은 계약전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현금납부 및 신용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501홍길동"이라고 기재)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공급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유상옵션) 공사비 계약금	우리은행	계약 전 별도 통보예정	(주)대우건설
플러스옵션(유상옵션) 공사비 중도금 및 잔금	우리은행	개인별 지정 가상계좌번호	(주)대우건설

(4)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팬코일유니트는 거실과 침실1(안방)은 기본으로 제공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59타입은 침실2추가/ 79, 84A, 84B타입은 침실2+침실3 추가 가능)
- 팬코일유니트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팬코일유니트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유니트 선택시 팬코일유니트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유니트 설치시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상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유니트는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타입 벽체개방 선택시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용 팬코일유니트의 용량은 증설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 품목인 추가 팬코일유니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실면적 증가에 따라 냉방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미 선택시 해당부위에는 주방가구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양문형냉장고 미 선택시 해당부위에는 주방가구 기본장이 설치되며, 일반냉장고 설치시 주방가구장보다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품목인 일반 가스쿡탑(엘지전자/3구형/STS/HK631ACN)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전기쿡탑 미 신청세대는 일반 가스쿡탑(엘지전자/3구형/STS/HK631ACN)이 시공되며, 품절 · 품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가전 옵션은 각각 해당 가전제품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항으로 제품 및 시공 관련 하자보수의 책임은 각 가전사에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호실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격, 디자인, 제품사양 등에 대해 교체 및 수정요구와 해약이 불가하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최초 모집공고 공급금액 이하로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입주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1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월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타 시설(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고 수인·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관련 유의사항)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호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279호, 2017.05.23)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공급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원)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클럽라운지(근린생활시설 129호)는 오피스텔의 부대시설이 아닌 분양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도:식음시설 등)로 공급공고상 해당용도 및 분양가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 클럽라운지의 유료식사서비스는 근린생활시설 129호의 소유자(수분양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실제 운영자가 입주자 및 일반이용객의 이용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용단가·운영기간·운영방법 등 임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클럽라운지의 유료식사서비스 운영에 있어 운영목적 및 운영방법에 배치되거나 이용객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계약자 및 입주자들은 클럽라운지 운영에 대한 이용단가·운영기간·운영방법·운영중단 및 외부인들의 출입 등의 프라이버시·보안 등의 이유로 일체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129호가 분양된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상 해당용도를 명기하는 것 이외에 실제 운영방식 및 여부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동별 출입동선은 모든 동이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패널, 지열설비가 오피스텔 옥외 및 건물 옥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세대에 시각적 현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학교, 도로망, 철도(지하철),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복합쇼핑몰 등 각종시설]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오피스텔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품절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동질 · 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추후 고양시 도시경관디자인자문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경관조명 계획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며,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재질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주변 단지의 신축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 및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 ·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해당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입주시, 선행행정행위(건축허가)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후행행정행위(사용승인등)에 대하여 부당한 방해행위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경우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일반계약자 및 사업주체에 발생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을 수인·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는 냉각탑,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수인하신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삼송지구 상업 1블록(오피스텔) 입주세대(1,192세대) 초등학생은 신설예정인 가칭)삼송1초, 중학생은 신설예정인 가칭)삼송1중 설립 시 고양중학군[고양중, 가칭)삼송1중] 내 배치할 계획이며, 가칭)삼송1초, 가칭)삼송1중 학교설립 확정여부 및 개교시기는 향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학교설립심의 및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설예정 초 · 중학교의 학교설립 지연 또는 취소 시 상업 1블록 입주세대 초 · 중학생은 인근학교(삼송초, 고양중)에 배치될 수 있으며, 해당 오피스텔로부터 인근학교까지의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삼송지구외 통일로 좌측으로 군부대(영내 사격장 운영)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양삼송지구내 남단으로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매스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삼송지구내 집단에너지시설 및 전기공급시설(송전철탑)이 설치됩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중 운동시설(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이용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59㎡, 79㎡, 84A㎡ 타입이 설치되고, 미설치된 84B㎡타입은 모형으로 확인하며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확인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호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 팬코일 유니트, 점검구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형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호실 내 분전반(전기, 통신)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호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가구, 가전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등 불가피한 경우 동질 · 동가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CG(투시도, 조감도, 부대시설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 지상 1층에는 103동 하부에 위치한 회차동선과 단지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차량, 이삿짐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 103동 코어 중 일부(비상용 엘리베이터, 계단)는 부대시설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25층에는 피난안전구역, 제연휀룸 등이 설치되고 각 동 옥탑지붕에는 대피공간 및 소화수조가 설치되며 각동 25층 피난안전구역 및 옥탑지붕 대피공간, 소화수조에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4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름을 확인 · 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북측(폭 28m), 동측(폭 46m)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건물 특성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률에 따라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연돌효과에 따른 부하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닫힘과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PIT, 팬룸, 급배기구 및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 및 대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지분으로 하며 개별호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북측(원흥3로변) 및 동측(권율대로변)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통행에 제한 또는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소수점이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은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 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와 현황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확인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동 공용부 창호의 경우 계단실에는 5개층마다 1개소,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에는 자동개폐창호가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G(투시도, 조감도 등), 호실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수인하고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없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건물명칭 및 상가간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1, 102, 104동은 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각각 세대를 연결하고, 103동은 단일 코어로 구성되어 일부세대의 출입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거리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차는 1,265대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1층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용으로 사용하고 지하2층~지하5층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 · 수인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1층	지하2층~지하5층
사용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하적용 차량	오피스텔

• 103동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및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지하1층에 별도의 출입차단장치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이용객 등 출입으로 인해 소음, 야간불빛 등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고 사전에 필히 확인 · 수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고, 미술작품 설치 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될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의 쓰레기 처리공간과 지하 1층 각동 코어와의 거리와 동선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지상 1층을 통해 각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주차장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삿짐 차량은 제한(높이 3.0m)됨으로 사전에 확인 · 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침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동측 및 103동 북측에 단지의 주출입문주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부출입문주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부출입 문주가 설치되며 기타 시설물로 인한 시각적 간섭과 사생활침해, 야간불빛, 음영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1, 102동의 지상 1,2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층 외부 및 피트층에 실외기 설치로 인한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의 중앙광장과 각동 출입구 인근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설치예정이며, 위치는 관련도서를 확인하시고 추후 위치와 대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룡천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를 구분하는 인공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단지 내 출입통제를 위해 경계를 구분하는 인공펜스(트렐리스, 트렐리스 도어)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건축물로써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오피스텔 입주자의 일방적 제한조치가 불가하며 상호간 협의 · 운영하여야 합니다. • 104동의 경우 101,102,103동과 달리 지상 1,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으므로 층수 및 높이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에 세대가 있는 104동은 우수의 범람, 사생활 침해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과 900mm의 단차가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로인해 계단 및 램프를 통한 진입이 필요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오피스텔 출입구와 부대시설 출입구가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 출입통제 및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석재(일부 금속재)이고, 고층부 마감재는 페인트와 금속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위치 및 층수에 따라 마감재가 다름으로 인해 외관 및 빛 반사, 현휘 등의 간섭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및 103동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상부에는 캐노피가 설치됨을 확인하시고,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하부 경사로 인근에는 어린이통학버스(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승하차 공간 및 동선이 있어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층세대의 정원공간과 101, 102, 103동 3층의 일부세대 전면에 위치한 옥상녹지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화 할 수 없으며 일부세대는 외부로 통하는 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며 녹지공간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 수인하시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층세대의 정원공간과 101, 102,103동 3층의 일부세대 전면에 위치한 옥상녹지공간의 인근에는 사생활침해, 보안상 이유로 인공펜스, 트렐리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이는 해당 각 호실의 전용공간이 아님을 확인 · 수인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3층에 위치한 옥상녹지공간은 단지 구조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인접한 동의 코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세대마다 출입가능 여부가 차이 있음을 확인 · 수인하시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103동과 104동 사이에는 차량회차공간이 계획되어져 있고,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101동과 104동 사이에는 육생비오톱과 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내 공동시설로서 소음 및 시각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광장, 103동과 104동 사이, 101동과 104동 사이, 101, 102, 103동 하부에는 DA(Dry Area)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건물기능을 위한 장치로서 위치이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거를 요구할 수 없고 추후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 1층 주차장 활용시 불편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지의 북측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출입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부지의 동측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의 특성상 지하철(3호선)과 인접해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 103동의 하부에는 부대시설이 설치예정이고 이용자들의 행태에 의해 소음,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부대시설 출입구가 인접해 있어 혼잡, 통행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 102동의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예정이고 이용자들의 행태에 의해 혼잡 통행불편, 소음,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 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1~4층, 최상층의 일부 호실은 단위호실 방범을 위하여 호실 내에 방범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기계전기설비) • 냉각탑은 103동 남서측의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어, 계절변화에 따라 백연(수증기)이 D.A를 통해 배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1층에는 40대의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관련도서를 확인하시고 추후 위치와 충전기 수는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냉각탑은 통합으로 사용하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분리되어 구획되어 있으며 실별의 위치, 면적,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거실과 침실1은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가 기본 제공되며 타 실에 설치를 원할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냉방은 지역냉방 열원을 이용한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 및 점검구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별, 호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 · 수인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와 호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 · 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팬코일 유니트의 냉방 열교환기 공급설비가 중앙제어로 작동됨에 따라 장비운전을 중단할 시 실내 냉방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이는 관리상의 사항으로 시행자,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 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제한으로 실내 냉방기기의 용량 증대 교체 및 증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고 기계식 환기 장치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 및 외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오피스텔 공용복도에는 소방법에 의해 배연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3~10층 세대 거주공간 내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고, 통행 및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설치된 용량 외에 입주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입주자가 공사해야 합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위호실 천정내부에 상부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최상부와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휀, 탈취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백연,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의 조건 및 사용자의 이용에 따라 일부 실에서 창호 등에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내측에 설치된 세탁실을 포함한 각 실의 내부 온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환경 및 행태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일부구간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위치에 따라 현휘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PS(통신실)는 각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북측 출입구에는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맨홀이 설치되며, 이는 법적사항으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에는 상시개방형 갑종방화문(자동폐쇄장치설치)이 설치되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장비이며, 이에 대해 위치이동, 삭제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냉각탑은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 옥상으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통신함, 분전함은 세대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주방 벽면에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각 실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직 · 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3~11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계획이며 이를 확인 · 수인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3~11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은 도어용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장비이며, 이에 대해 위치이동, 삭제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장비이며, 이에 대해 위치이동, 삭제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푸르지오시티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등)외 IOT 연동 제품은(공기청정기, 가습기, 기타 등)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폐기물보관소는 각동 지하1층에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샤워/탈의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등)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관리단의 구성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오피스텔 시설물로써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택배보관소, 쓰레기처리장 등)은 각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고, 각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은 타단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위호실) • 지상 3~11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거실창에는 소방관진입창 표시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계획이며 이를 확인 · 수인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호실 내 실 간벽은 골조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일반 벽식구조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 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에는 온돌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 안전난간, 프레임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하자보수는 관련법률에 따릅니다. • 침실 1의 문은 화재시 대피공간에 준하는 역할을 위해 방화문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시행위탁자 / 분양대행사 ㈜엠디엠플러스, 시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자 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행정상 입주지연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며 미시공, 오시공 내지 변경시공 등을 포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부담합니다.
- 하자보증책임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시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부담합니다.
-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한국자산신탁㈜가 매도인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는 시행위탁자 / 수익자인 ㈜엠디엠플러스(또는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분양대금은 본 신축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 광고할 사항

- 등록사업자 : 서울 070012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 사업방식: 관리형토지신탁

▣ 사업관계자 명칭

구분	시행 위탁사	사업주체(시행사)	분양대금관리자	분양사업자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23번지

▣ 홈페이지 : http://www.삼송푸르지오시티.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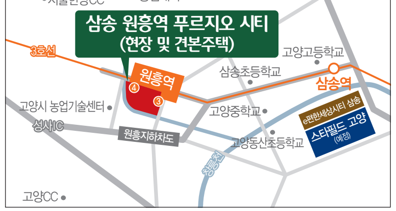

문의 031)965-2100